

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0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7. 1. 고성군수
나. 회 부 일 자: 2024. 7. 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4. 7. 17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0조의2에 따라 고성군이 포괄적으로 규정·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3. 주요내용

가.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절차 명시, 지원사업 대상 구체화(안 제4조)
- 제4조 제목 변경(경비의 지원 → 보조금 지원)
- 보조사업 대상 구체화(신설)
나. 포상 근거 규정 마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다. 협의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2209(2024. 6. 3.)호]
라. 기타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933호
가) 예고기간: 2024. 5. 22.(수) ~ 2024. 6. 11.(화)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보조금 지원(안 제4조)
 -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 - 포상(안 제7조)
 -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 소속 위원 중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 사업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평화통일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: 없음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